



일본 iDeCo(개인형 확정 기여 연금) 개정 현황

강윤지 연구원

요약

일본은 지속적으로 iDeCo(개인형 확정 기여 연금)를 개정하여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유도하고 있음. 2017년에는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22년 4월에는 iDeCo 수령 개시 가능 연령을 확대하고 5월에는 iDeCo 가입 연령을 확대함. 10월에는 기업형 확정 기여 연금과 iDeCo의 동시 가입 요건을 완화함. 2024년 12월에는 iDeCo의 납입한도가 추가로 확대될 예정임

- 일본은 2002년에 iDeCo(이데코; 개인형 확정 기여 연금)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유도하고 있음
 - iDeCo는 일본의 확정 기부 연금법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는 사적연금제도로 임의 가입이며, 자신이 납부한 연금을 스스로 운용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음¹⁾
 - iDeCo는 납부 금액 전액이 소득 공제된다는 것, 운용이익을 비과세로 재투자할 수 있다는 점, 수급 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세 가지 세제 혜택이 가장 큰 이점임
 - 가입자는 주로 절세 효과 때문에 iDeCo에 가입하고 있음
 - 일본 투자신탁협회에서 실시한 2021년 조사 결과²⁾에 의하면, iDeCo 가입자가 느끼는 iDeCo의 장점은 '납입한 전액이 소득 공제가 된다는 점(32.6%)', '금융상품 운용이익에도 비과세로 재투자 가능한 점(11.0%)', '투자 금액을 받을 때도 세제 혜택이 있음(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7년부터는 기존에 자영업자나 기업연금이 없는 직장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전업 주부, 기업연금 가입 직장인, 공무원 등이 가입 대상으로 포함됨³⁾
 - 2017년 가입 대상 범위 확대로 2017년 3월 말 기준 45만 명이었던 가입자가 2018년 86만 7천 명으로 약 1.9배 증가했음⁴⁾
- 2022년 4월에는 iDeCo의 수령 개시 가능 연령이, 5월에는 가입 가능 연령이 확대됨⁵⁾

1) iDeCo公式サイト. “iDeCo(イデコ)の特徴”

2) 投資信託協会(2022. 3), “投資信託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報告書-2021年(令和 3年) NISA, iDeCo等制度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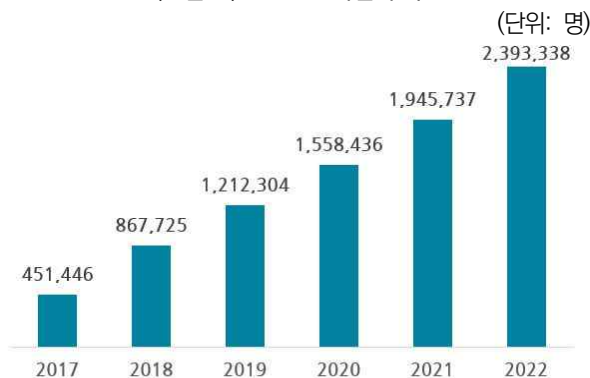
3) iDeCo公式サイト. “iDeCo(イデコ)の仕組み”

4) 運営管理機関連絡協議会(2022. 3), “確定拠出年金統計資料”

5) iDeCo公式サイト. “第9回「法改正でますます拡充2022年からiDeCoはどう変わる？」”

- 60세부터 70세까지였던 기존 iDeCo 수령 개시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 60세부터 75세까지로 확대되어 비과세 운용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됨
 - 일본의 공적연금 수령 개시 연령 또한 iDeCo와 동일하게 60세부터 75세까지로 개정되어 공적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키고 iDeCo 비과세 운용 기간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커짐
- 2022년 5월 1일부터 iDeCo의 가입 가능 연령이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국민연금 피보험자라는 것이 가입의 주된 요건이 됨
 -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직장인·공무원,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한 해외 거주자가 새로운 가입 대상으로 포함됨

〈그림 1〉 iDeCo 가입자 수



자료: 運営管理機関連絡協議会(2022. 3)

〈표 1〉 기업형 DC와 iDeCo 동시 가입 시 납입 한도액

구분	기업형 DC	기업형 DC + 확정급여기업연금(DB)
① 사업주	최대 5.5만 엔/월	최대 2.75만 엔/월
② iDeCo	최대 2만 엔/월	최대 1.2만 엔/월
①+② 합계	최대 5.5만 엔/월	최대 2.75만 엔/월

자료: iDeCo公式サイト

- 또한 2022년 10월 1일부터 기업형 확정 기여 연금(기업형 DC)과 iDeCo의 동시 가입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기업형 DC 가입자 약 750만 명이 새로운 가입 대상이 됨
 - 기존에는 노사 합의 및 규약의 변경이 없는 경우 iDeCo와의 동시 가입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개정 이후 본인 의사만으로도 iDeCo 가입이 가능해짐
 - 다만, 기업형 DC 금액과 합산하여 월액 5.5만 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업형 DC와 확정급여 기업연금(DB)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최대 월액 2.75만 엔을 초과할 수 없음⁶⁾
- iDeCo의 납입한도는 2024년 12월부터 추가적으로 확대될 예정임
 - 2024년 12월부터 다른 확정급여형 제도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 iDeCo 납입 한도액이 1.2만 엔에서 2만 엔으로 인상되며 최대 월 납입액 또한 기존 2.75만 엔에서 5.5만 엔으로 변경될 예정임⁷⁾

6) iDeCo公式サイト, “2022年の制度改革の概要”

7) 厚生労働省, “2020年の制度改革”